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운영규정 개요

- 제21조 (서비스 이용계약)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 제22조(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으로서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 방문목욕을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다.
- 제23조 (서비스의 내용) 기본적인 서비스 내용은 아래와 같음

구 분	사 업 내 용
방문요양 서비스	<p>가. 신체활동지원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 청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배설 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등</p> <p>나. 인지활동지원 : 인지자극활동, 일상생활함께하기</p> <p>다. 인지관리지원 : 인지행동변화관리 등</p> <p>라. 정서지원 : 의사소통 도움 등 말벗, 격려</p> <p>마.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 개인활동지원, 식사준비, 청소, 및 주변정리, 정돈, 세탁, 외출, 병원, 산책동행 등</p>

■ 단, 다음 항목의 경우는 제외

- 가사지원서비스는 수급자 본인에게 관련된 것만 인정된다.
- 가족에 관련된 일과 요양보호사 업무에 어긋나는 업무행위는 하지 않는다.

- 제25조 (서비스 제공시간)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한 주7일 09:00~18:00 내에서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부득이 할 시 변동 상황이 발생되면 조정할 수 있다.
- 제26조 (계약기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하되 1년 또는 장기요양기간 인정서의 유효기간을 기본으로 한다.
 2. 계약기간의 종료 시에는 재계약 할 수 있다.
- 제27조 (계약자, 수급자(보호자)의 의무) 서비스 제공자와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의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서비스제공자 의무
 - 가.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원 입원 시는 급여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 나.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 다.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의무

가. 월 이용료 납부 의무

나.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다. 방문목욕서비스 전 목욕서비스와 관련된 담당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 및 보호자는 목욕서비스 전 본인(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하고, 미 설명에 대한 사고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단. 담당요양보호사가 목욕서비스 방법이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 할 수 있다.)

3. 신원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4. 계약 해지 등 기타 사항

이용규칙 및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 또는 다음의 경우에는 계약기간 중 이라도 원인을 분석하여 계약을 취소하거나 중단 및 해지 할 수 있다.

가. 센터는 이용자가 센터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나. 이용자는 센터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5. 이용절차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등급판정을 받고 센터에 전화나 방문으로 신청·접수한다.

나. 신청, 접수를 받은 센터는 수급대상 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체결에 필요한 상담일지, 정보제공동의서, 서비스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다.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중 개인 및 병원 등의 업무로 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로 본인 또는 타인이 연락하여 서비스 일정을 조정토록 한다.

6. 구비서류 : 이용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장기요양인정서 1부

나.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다. 복지용구급여확인서 1부

- 제28조 (계약해지) 규정 제27조 ‘4.’호에 의하여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하거나 중단 및 해지할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안내

○ 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 65세 이상으로 거동이 불편한 분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필요 시 별도 통보)
-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분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노인성질환이 기록된 의사소견서

○ 신청장소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운영센터

○ 본인일부부담금 (2024.1.1.)

요양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한도액(원) (본인부담금)	2,069,900 (310,480)	1,869,600 (280,400)	1,455,800 (218,370)	1,341,600 (201,240)	1,151,600 (172,740)

★본인일부부담금의 경우 급여종류, 횟수, 사용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가정에서 서비스를 받는 경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며, 의료급여 및 경감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의 6% 내지 9%만 부담합니다)
- 매월 본인부담금을 요양기관에 납부하신 후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 보관하십시오

장기요양 서비스 안내

○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제공

- 신체수발 : 가정내 목욕, 배설, 화장실이용, 옷 갈아 입히기 등
- 가사지원 : 취사, 청소, 주변정돈, 장보기 등

★ 단. 장기요양수급자 본인에게 해당되는 서비스만을 제공하며,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와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2항 장기요양급여의 범위]

○ 방문목욕 : 두 사람의 요양보호사가 전신목욕을 제공

※ 구비서류

-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인정서 (1~5등급) 사본 1부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
-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사본 1부